

**●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7호**

**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**

**2018년 7월 23일**

**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**

**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**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9 본문 중 “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(이하 “한국산업표준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(이하 “한국산업표준”이라 한다)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.

제31조의2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조종자”를 각각 “관리자”로 한다.

제31조의26의 제목 “(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등)”을 “(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검사대상기기 조종자”를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, “조종범위”를 “관리범위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조종자”를 “관리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”를 “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 한다.

제31조의27의 제목 “(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준)”을 “(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검사대상기기 조종자”를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검사대상기기 조종자”를 각각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, “조종설비”를 “관리설비”로, “통제·조종”을 “통제·관리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검사대상기기 조종자”를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 한다.

제31조의28의 제목 “(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신고 등)”을 “(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검사대상기기 조종자”를 각각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, “조종할 검사대상기기”를 “관리할 검사대상기기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검사대상기기 조종자”를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“검사대상기기 조종자”를 각각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 한다.

제31조의29제1항 중 “검사대상기기 조종자”를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 한다.

제32조의2제1항, 제2항 및 제4항 중 “검사대상기기 조종자”를 각각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 한다.

제33조제2항제23호 및 제24호 중 “검사대상기기조종자”를 각각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 한다.

제35조제1항제3호 중 “검사대상기기 조종자”를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검사대상기기 조종자”를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, “조종범위”를 “관리범위”로 한다.

별표 3의5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안전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
가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모두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(보일러의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·가공하는 공정에만 사용되는 보일러만 해당한다. 이하 나목에서 같다): 4년.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8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나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중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: 2년.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별표 3의9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의10의 기술인력란 중 “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”를 “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 한다.

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“검사대상기기 조종자”를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 중 “조종자”를 “관리자”로 한다.

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중 “검사대상기기 조종자”를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 한다.

별지 제25호서식의 제목 “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(해임, 퇴직)신고서”를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(해임, 퇴직)신고서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선임된 조종자”를 “선임된 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, “해임된 조종자 또는 퇴직한 조종자”를 “해임되거나 퇴직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, “검사대상기기 조종자”를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 하며,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“조종할 검사대상기기”를 “관리할 검사대상기기”로 한다.

별지 제28호서식의 제목 “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”를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”로 한다.

별지 제29호서식의 제목 “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승인서”를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승인서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조종자”를 각각 “관리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)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3의9]

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(제31조의26제1항 관련)

관리자의 자격	관리범위
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	용량이 30t/h를 초과하는 보일러
에너지관리기능장,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	용량이 10t/h를 초과하고 30t/h 이하인 보일러
에너지관리기능장, 에너지관리기사,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	용량이 10t/h 이하인 보일러
에너지관리기능장, 에너지관리기사, 에너지관리산업기사, 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	1.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이고, 전열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2.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.5킬로와트 이하인 것 3. 압력용기

비고

1.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의 용량은 697.8킬로와트를 1t/h로 본다.
2. 제31조의27제2항에 따른 1구역에서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용량은 이를 구성하는 보일러의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.
3.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검사대상기기 또는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4.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은 위 표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의26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.

[별표 4의2]

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(제32조의2제1항 관련)

구분	교육과정	교육기간	교육대상자	교육기관
시공업의 기술인력	1.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	1일	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 제1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	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및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보일러설비협회
	2. 난방시공업 제2종·제3종 기술자과정	1일	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 제2종 또는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	
검사대상기기관리자	1. 중·대형보일러 관리자과정	1일	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용량이 1t/h(난방용의 경우에는 5t/h)를 초과하는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의 관리자	공단 및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
	2. 소형보일러·압력용기 관리자과정	1일	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제1호의 보일러 관리자과정의 대상이 되는 보일러 외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관리자	

비고

1.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 등에 대한 교육과목, 교육수수료 및 교육 통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2. 시공업의 기술인력은 난방시공업 제1종·제2종 또는 제3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날부터,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, 그 후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.
3. 위 교육과정 중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난방시공업 제2종·제3종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, 중·대형보일러 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형보일러·압력용기 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4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도의 변경, 기술의 발달 등 안전관리환경의 변화로 효율 향상을 위하여 추가로 교육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의 기관·기간·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열사용기자재 중 시·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안전관리,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업무 성격에 보다 부합하도록 그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모두 작성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중 어느 하나를 작성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산업통상자원부 제공>